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50,005,854	10,500,176
일반회계	317,727,117	9,531,814
특별회계	32,278,737	968,362
기타특별회계	32,278,737	968,362
상수도사업	1,704,122	51,124
하수도사업	1,385,751	41,573
수질개선	5,213,293	156,399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32,392	12,972
의료급여기금	559,016	16,770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04,171	15,125
소득특화사업	4,906,014	147,180
농공단지조성사업	2,252,291	67,569
공영개발사업	4,423,700	132,711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0,897,987	326,94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612,409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4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
3. 재해대책 및 복구비